##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24

발의연월일: 2020. 8. 13.

발 의 자:최인호·박상혁·박재호

강선우 • 전재수 • 김병욱

송옥주 · 이학영 · 조응천

권칠승 · 박광온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평가·인정하는 것으로 국가 자격증 700여종, 민간 자격증 29,300여종이 있음.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그런데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실효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법무부장관 등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2018년 12월 17일자로 의결하여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보세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2제2항·제3항 신설 및 제275조의3).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의 업무를 수 행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5조의3(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 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 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
- 2. 제165조의2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 나.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거

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린 자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생 략)	등의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 &lt;신 설&gt;</u>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
	<u>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의</u>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또
	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
	<u>다.</u>
<u>&lt;신 설&gt;</u>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
	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
	<u>서는 아니 된다.</u>
제275조의3(타인에 대한 명의대	제275조의3(타인에 대한 명의대
여죄)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여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의 벌금에 처한다.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	1.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
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	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
	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
	른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
	<u>한 자</u>

- 2. 제165조의2를 위반하여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
    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 나.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린 자
  - <u>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u> 알선한 자